

##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관련 업무를 추진중이나,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규제혁신심의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개선 과정에 정부의 입장만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제 신설과 개선을 위한 회의체를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민간주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기존의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종전의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합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함(안 제2조)
- 나.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재심사요청에 관한 사항
3. 국무조정실,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업무 또는 행정·법률 등 사회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이하 “안전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도시 분과위원회
2. 건축 분과위원회
3. 주택·토지 분과위원회
4. 모빌리티·물류 분과위원회
5.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도시 분과위원회는 국토 및 도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건축 분과위원회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주택·토지 분과위원회는 주택, 토지 및 국토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모빌리티·물류 분과위원회는 교통, 물류, 자동차 및 항공 운송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는 건설, 기술안전, 도로, 철도 및 항공 인프라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안전이 분과 중 여러 개의 분과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대표 분과를 정하여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안전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안전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전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간사 및 운영지원반)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과 운영지원반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운영지원반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③ 운영지원반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소속 지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및 항공정책실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⑤ 운영지원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후속조치) 안건 담당부서는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심사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자체심사가 개시된 규제 신설·강화 법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규제개선 건의과제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결처리 되지 아니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과제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건의과제 외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접수된 건의과제부터 이 영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